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혜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33 발의연월일: 2020. 9. 18.

발 의 자:최혜영・인재근・서영석

김예지 · 양경숙 · 이원택

이성만 · 이탄희 · 박홍근

김회재 · 오영환 · 송재호

이수진비 · 김영호 · 황운하

권칠승 • 기동민 • 김승원

이수진 · 맹성규 · 장철민

김남국 • 한정애 • 오기형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표결 시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기립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일부 장애인의 경우 기립표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거수표결 등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을 하되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 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 결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12조제1항 단서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2조제1항 단서 중 "기립표결"을 "기립표결 또는 거수표결로, 기립표결 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2조(표결방법) ① 표결할 때	제112조(표결방법) ①
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	
결로 가부(可否)를 결정한다.	
다만,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	
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<u>기립표</u>	기립표
<u>결</u> 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.	결 또는 거수표결로, 기립표결
	및 거수표결이 어려운 의원이
	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
	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
	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
② ~ ⑨ (생 략)	② ~ ⑨ (현행과 같음)